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9. 14 선고 2015나5651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9. 14 선고 2015나56513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9. 18 선고 2015가단19155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

피고, 항소인 A

변론 종결 2017. 8. 17.

판결 선고 2017. 9. 14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. 9. 18. 선고 2015가단19155 판결

주 문

1.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,

1) 남양주시 B 유지 2,18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1, 40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㉔ 부분 95㎡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고, 위 주택 및 부속건물 내 시설물을 취거하고,

2) 같은 도면 표시 59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㉕ 부분 27㎡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 및 화단을 철거 및 취거하고,

3) 같은 도면 표시 45, 42, 41, 40, 21, 39, 38, 37, 36, 35, 34, 33, 52, 51, 50, 49, 48, 47, 46,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㉔ 부분 27㎡ 지상에 설치된 장독대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 및 취거하고,

4) 같은 도면 표시 53, 52, 33, 32, 31, 30, 29, 28, 65, 64, 63, 62, 61, 60,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㉔ 부분 44㎡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, 마루바닥, 개집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 및 취거하고,

5) 같은 도면 표시 40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65, 64, 63, 62, 61, 60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45, 44, 43, 42, 41,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0㎡를 인도하라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3,543,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8. 2.부터 2017. 9. 1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다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항의 가목,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 제1항의 가목1) 및 피고는 원고에게 14,478,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. 7. 3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취거청구를 추가하였고,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,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, 여기에서 '사유가 없어진 후'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).

나.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,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. 9. 18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,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, 피고는 2015. 10. 19. 판결정본을 영수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. 10. 21.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.

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,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분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최종 주소지로 3회에 걸쳐 각 송달(그 중 1회는 특별송달)하였음에도, 수취인불명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각 송달불능이 되었는데,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면서 위 주민등록초본의 최종 주소지와 같은 주소를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1심 법원이 송달한 소장 부분 등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법원이 발송한 소장 부분 등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거나, 그로써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·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, 남양주시 B 유지 2,181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는 2004. 4.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65, 64, 63, 62, 61, 60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45, 44, 43, 42, 41,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0m² 지상(이하 '이 사건 점유 토지'라고 한다)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.

별지 도면 표시 21, 40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㉞ 부분 95m ² (이하 '㉞ 부분'이라고 한다)	주택, 부속건물
같은 도면 표시 44, 43, 42, 45,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㉡ 부분 7m ² (이하 '㉡ 부분'이라고 한다)	진출입로
같은 도면 표시 59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㉢ 부분 27m ² (이하 '㉢ 부분'이라고 한다)	울타리, 화단
같은 도면 표시 45, 42, 41, 40, 21, 39, 38, 37, 36, 35, 34, 33, 52, 51, 50, 49, 48, 47, 46,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㉣ 부분 27m ² 지상(이하 '㉣ 부분'이라고 한다)	장독대 등 시설물
같은 도면 표시 53, 52, 33, 32, 31, 30, 29, 28, 65, 64, 63, 62, 61, 60,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㉤ 부분 44m ² 지상(이하 '㉤ 부분'이라고 한다)	울타리, 마루바닥, 개집 등 시설물

다.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180m² 부분에 관한 각 기간별 차임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, 2015.

6. 2. 이후의 차임도 연 1,146,6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.

2005. 6. 2. ~ 2006. 6. 1.	837,540
2006. 6. 2. ~ 2007. 6. 1.	984,960
2007. 6. 2. ~ 2008. 6. 1.	1,323,000
2008. 6. 2. ~ 2009. 6. 1.	1,506,600
2009. 6. 2. ~ 2010. 6. 1.	1,367,280
2010. 6. 2. ~ 2011. 6. 1.	1,398,060
2011. 6. 2. ~ 2012. 6. 1.	1,236,960
2012. 6. 2. ~ 2013. 6. 1.	1,249,200
2013. 6. 2. ~ 2014. 6. 1.	1,135,260
2014. 6. 2. ~ 2015. 6. 1.	1,146,600
합계	12,185,460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, 당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, 당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3. 건물철거 및 시설물취거청구,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유 토지 위에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건물철거 및 시설물취거, 토지인도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㉠ 부분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고, 위 주택 및 부속건물 내 시설물을 취거하며, ㉡ 부분 27m²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 및 화단을 철거 및 취거하고, ㉢ 부분 27m² 지상에 설치된 장독대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 및 취거하며, ㉣ 부분 44m²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, 마루바닥, 개집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 및 취거하고,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는, 원고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점유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게 된 것이므로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) 피고는, 이 사건 점유 토지가 남양주시의 공원화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점유 토지가 공원화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,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(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점유 토지는 남양주시의 공원화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)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피고는, 원고가 인근 토지의 점유자들과는 달리 피고에 대하여만 대부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와의 대부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, 역시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).

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, 해당 부분을 권한 없이 점유하여 사용·수익함으로써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,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토지 중 180m² 부분에 대한 2005. 6. 2.부터 2017. 6. 1.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1) 먼저 피고는,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 인정사실,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'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'고 규정하여 위 조항의 대상을 '국가'라고 명시하고 있는데, 원고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의 나.)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(공공기관)인 점, ② 국가재정법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'국가'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, ③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'독립기관은 국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

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'고 규정하고 있는데, 원고는 위 독립기관 또는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위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2) 다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(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68217 판결 참조),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,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일부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,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 내지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75. 2. 25. 선고 74다1557 판결,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두15469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원고는 2015. 6. 1.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부당이득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, 위 청구와 구분되어 특정이 가능한 2012. 1. 1. 이전의 부당이득액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2016. 7. 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.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그 날짜로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,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16. 7. 7.로부터 10년을 역산한 2006. 7. 8.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. 결국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180㎡ 부분에 대한 2006. 7. 8.부터 2017. 6.

1.까지의 부당이득액 합계 13,543,974원(아래 표 참조, 원 미만 버림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. 7. 3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. 8. 2.부터

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. 9. 14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006. 7. 8. ~ 2007. 6. 1.	887,814
2007. 6. 2. ~ 2008. 6. 1.	1,323,000
2008. 6. 2. ~ 2009. 6. 1.	1,506,600
2009. 6. 2. ~ 2010. 6. 1.	1,367,280
2010. 6. 2. ~ 2011. 6. 1.	1,398,060
2011. 6. 2. ~ 2012. 6. 1.	1,236,960
2012. 6. 2. ~ 2013. 6. 1.	1,249,200
2013. 6. 2. ~ 2014. 6. 1.	1,135,260
2014. 6. 2. ~ 2015. 6. 1.	1,146,600
2015. 6. 2. ~ 2016. 6. 1.	1,146,600
2016. 7. 2. ~ 2017. 6. 1.	1,146,600
합계	13,543,974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판사김성곤

판사정동주

판사이준구

별지

1) 특정의 편의를 위해 원고가 2017. 8. 16.자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를

측량감정서에 첨부된 측량감정도로 교체하고, 측량감정도의 내용에 맞추어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.

한편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44, 43, 42, 45,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취거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,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(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분 토지는 건물 진출입도로 사용될 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).